

서 면 질 문 답 변 서

기획실소관

박상규 의원

□ 질 문

1. 주차난 해소와 경영수익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재원과 민간이 함께 투자하여 주차장시설 관리공사를 설립할 용의는?
2. 부천역주변 교통수요에 대처키 위해 민자를 유치하여 부천역 광장에서 남북으로 이어지는 중앙로 지하에 지하상가와 대규모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용의는?

□ 답 변

○ 민관공동출자사업(제3섹타)운영의 필요성

-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 대처
- 민간부문의 자금, 정보, 기술등을 도입하여 행정의 공급비용절감 및 능률화와 경영성 제고
- 민간부문 참여환성화로 지역경제 신장

○ 제3섹타 추진현황

- 부천시 민관공동출자사업추진위원회 구성 _____ '94. 5월중(추진중)
- 민관공동출자사업 실태조사 실시중 _____ '94. 4 ~ 5월

※ 조사대상사업

- 주차장관리방안, 아파트형 공장건립, 체육시설 건립운영, 위락공원 조성사업 및 기타 시민공모(안)등

○ 향후계획

- 민관공동출자 대상사업 검토심의(추진위원회) _____ 6월
-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및 수지분석 실시 _____ 7 ~ 8월

※ 주차장시설 관리공사 설립 _____ 검토중

- 관련자치단체 실태조사

- 기 간 : '94. 4. 18 ~ 4. 23

- 조사결과 : 인천직할시(공단), 울산시(공단), 광주직할시(공사)

- 6월중 추진위원회 심의예정

※ 부천역주변 지하상가 건설 _____ 별도답변

지역경제국소관

장명진 의원

□ 질 문

1. 3월부터 상품권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부천시에도 등록할 수 있는가?

2. 상품권등록업체는 어디어디인가?
3. 상품권 발행할 시 발행보증금을 공탁해 도산 등으로 상환이 불가능 시 소비자에게 우선 변제해줘야 하는 소비자보호대책을 마련한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는가?

□ 답 변

1. ○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12월 상품권법이 개정되고 1973년 동법을 개정하여 상품권발행이 환발하였으나 1975년 12월 물가안정 및 파소비문제, 중소기업체에 대한 피해문제 제기 등으로 상품권발행을 전면금지하였습니다.
 - 1994년 3월부터 민간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를 점차 완화시켜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창달해 나가고, 정부의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상품권 발행을 전면 허용키로 하였습니다.
 - 상품권의 등록은 상품권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발행예정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에서 지급보증을 받은 후에 인가를 받고, 발행업체의 주된 영업소 또는 본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하므로 부천시에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부천시에서 상품권을 등록 발행중인 업체는 서울시 중구청에 등록을 한 (주)쌍산유통, 로얄백화점이 있으며 (주)비제바노에서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상품권등록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3. 발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상품권 상환불능 상황이 도래하는 경우 공탁 이외의 상환보장 방법으로 은행 등의 채무지급보증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품권소지자는 당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권리실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상품권의 미상환 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품권발행자가 공탁한 공탁물 또는 금융기관에 지급보증한 지급보증액에 의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질 문

- 그린벨트내 주유소 허가조건이 1순위, 2순위 등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유소 허가조건은 어떠하며 현재까지 허가신청자와 허가된 곳을 밝혀라.

□ 답 변

- 그린벨트내 주유소 허가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6호 덕목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하면서 구역내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허가조건과 허가신청자 및 허가자명단은 별첨과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배치계획 고시

1994. 2. 16

부 천 시

부천시 고시 제94-5호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천시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배치계획 및 허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4. 2. 16

부 천 시 장 (인)

제1조(목적) 본 고시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면서 구역내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주유소 배치계획 및 허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배치계획) ①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배치계획은 [별표1]과 같다.

② 개발제한구역 및 노선변 위치도는 [별표2]와 같다.

제3조(허가기준)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이어야 한다. 지정 당시 거주자 기준은 [별표3]과 같다.
2. 석유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경기도 고시 제383호(주유소허가 기준고시 '93. 11. 11)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다법과의 관계) 개발제한 구역내의 주유소 허가는 건축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수질및 대기)관계법령,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 시설기준등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신청및 처리) ① 개발제한 구역내의 주유소허가 신청은 [별표4]의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시 민원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본인 소유의 동일 필지에는 1건만 신청하여야 하고 본인 소유의 토지중 각각 다른 필지에 신청한 경우에는 건별로 처리순위 부여

③ 1필지 면적이 2,000㎡를 초과하는 경우 도면상으로 분할하여 신청가능하며 본인과 타인 명의로 따로 신청되었을 때는 건별로 처리순위 부여

④ 주유소의 허가신청은 접수순위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1994. 3. 2일 09:00 ~ 11:00 이내에 접수된(민원실내에 도착된 경우 포함) 신청서는 추첨에 의거 접수 순위를 결정하고, 다음 순위에 의거 처리한다.(추첨요령 별첨5)

1순위 자기소유의 토지에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한 경우

2순위 타인소유의 토지에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한 경우

제6조(허가의 특례) ① 허가요건을 갖춘 신청서중 다시 경계로부터 500m 내의 구역에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허가여부를 유보한 후 인접시와 협의하여 거리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허가하고, 거리기준에 저촉된 경우에는 배치계획에 불구하고 불허가 처리

② 인접시와 신청장소가 경합된 경우 인접시의 경계로부터 먼곳에 신청된 주유소에 대하여 허가되도록 상호 협의한다.

제7조(기타) ① 개발제한 구역내 주유소 배치계획은 본 고시에 의하고 고시문상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의 유권해석에 의한다.

부 칙

이 고시는 1994. 3. 2일 09:00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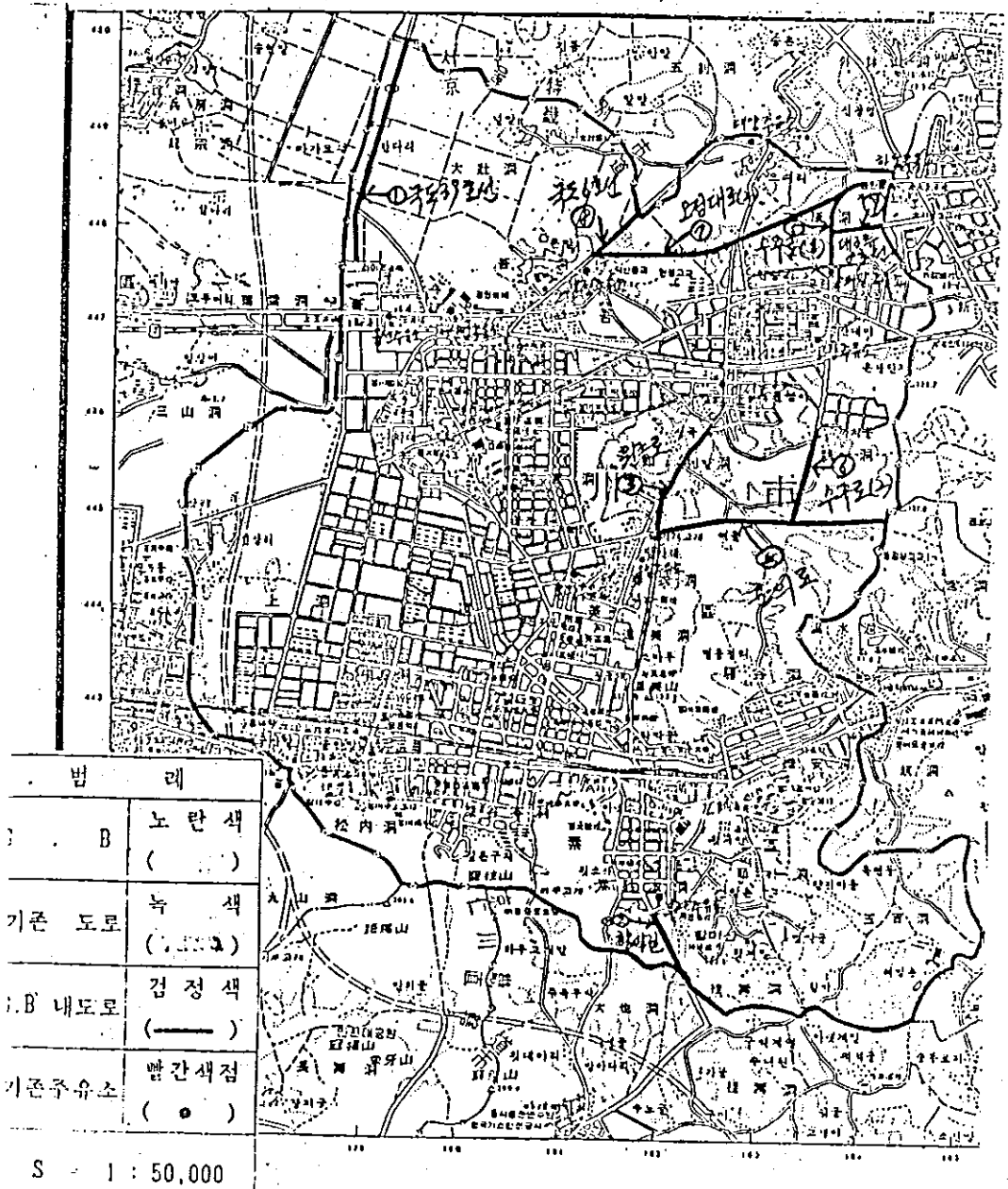
[별표1]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배치계획

번호	노선명	구 간		연장(M)	폭(M)	배치정수	비 고
		시 점	종 점				
1	국 도 39 호 선	삼 정 동 11-6	대 장 동 546-1	2,570	19	5	
2	합 미 길	소 사 동 317-2	소 사 동 산 52 - 1	500	25	1	
3	원 종 로	여 율 동 산 37 - 3	여 율 동 20-3	1,190	30	3	
4	춘 의 로	춘 의 동 115	작 동 산 60 - 1	1,500	25	3	
5	수 주 로 (1)	고 강 동 산 34 - 10	고 강 동 277-2	620	25	2	
6	수 주 로 (2)	작 동 61	작 동 276	1,230	25	3	
7	오정대로 (2)	오 정 동 102-3	고 강 동 2-6	2,880	50	5	
8	국 도 6 호 선	오 정 동 103-1	오 정 동 39-2	600	15	1	
9	대 3 류 8 호 선	고 강 동 219	고 강 동 산 33 - 2	500	25	1	

[별표2]

개발제한구역내 노선별 위치도



[별표3]

G·B내 지정당시 거주자 확인기준

구 분	화 인 요 령
1.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개발제한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1차 지정 : 71. 7. 30 2차 지정 : 72. 8. 25)	주민등록등본(거주이동 사실 확인가능용)
2.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당해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택 또는 토지권 소유하고 ◦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이내의 기간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 ◦ 현재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주민등록등본(거주이동 사실 확인 가능용) 토지대장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거주이동 사실 확인 가능용)
※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주민등록등본 (거주이동 사실 확인 가능용) 해당자의 졸업증명서

[별표4]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비 고
1. 허가신청서 2. 지하지장시설 명세서 1부. 3. 주유기 명세서 1부. 4. 일반대리점 경영자인 석유판매업자와 체결한 석유제품공급 계약서 사본 1부. 5.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각 1부. 6. 공증된 토지사용승락서(타인소유의 토지인 경우) 1부. 7. 건물 및 시설배치도(면적기재) 1부. 8. 동 고시 제3조 제1항에 정한 지정당시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지정당시 거주자 심사서는 시에서 배부) 9. 대한지적공사발행 거리측량성과도(도면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1부.	소 정 서 식

[별표5]

G·B내 주유소허가 순위 추천요령

1. 추천장소 입실제한

- 민원접수 1건당 신청인 1인만 입실
- 담당공무원(명찰 패용)
-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관 1~2명 입회

2. 추천권 부여

- 추천일시 : 접수일 13:00부터
- 추천권자 : 신청인 또는 대리인
- 지참서류
 - ①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기타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것
 - ②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 ③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의 경우)

3. 추천방법

- 추천순위 추천
 - ① 추천함에 허가신청 건수 만큼 준비된 추천용지 투입
 - ② 민원서류 접수 순서대로 호명하여 1매씩 추천
 - ③ 추천된 용지에 주소, 성명, 서명 후 소지보관
- 접수순위 결정 추천
 - ① 동일필지에 본인 명의로 2건 이상 신청한 경우 1건만 추천할 수 있음.
 - ② 추천함에 허가신청 건수 만큼 준비된 추천용지 투입
 - ③ 추천순위 번호 호명
 - ④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회수하고 1매씩 추천
 - ⑤ 추천된 용지에 주소, 성명, 신청지번, 전화번호 기재 후 회수

4. 「처리순위」적용

- 허가업무 처리과정에서 동일 요건일 때는 “처리순위”를 적용하여 선순위 선처리

별첨2

신 청 자 명 단

일련 번호	소 제 지	주 소	성 명	일련 번호	소 제 지	주 소	성 명
1	여월동 32-6	여월동 32-6	장복남	21	고강동 산34-22	고강동 25-1	안정호
2	작 동 200-2	작 동 200	김덕기	22	대장동 685-3	여월동 산55	박경준
3	춘의동 411	"	"	23	원종동 116-4	작 동 162	김기복
4	여월동 186-2	여월동 71	원장희	24	" 117-1	"	"
5	춘의동 421	" 243	원용칠외 1	25	" 117-7	"	"
6	대장동 685-6	대장동 670	구정애	26	고강동 15-2	고강동 11-23	김재현
7	" 685-7	"	원상희	27	춘의동 414	춘의동 26-1	이학영
8	춘의동 415	여월동 251-2	"	28	" 245	여월동 산2-14	유준영
9	여월동 257-1,2	"	"	29	대장동 676-6	고강동 11-23	김재현
10	" 28-1	" 78	남천우	30	소사본동 산52-1	오정동 546-8	하지홍
11	" 185-5	"	"	31	여월동 245-12	약대동 182-31	최재식
12	작 동 280	작 동 204-3	한기학	32	대장동 676-7	고강동 11-23	김재현
13	대장동 546-9	대장동 546-8	박종수	33	작 동 산49	" 25-1	안정호
14	여월동 32-7	여월동 169	이정하	34	오정동 37-1	작 동 126-1	민경재
15	" 181-1	" 144	이규란	35	여월동 18-7	오정동 546-8	하지홍
16	작 동 291-3	역곡동 130	박제창	36	" 243	여월동 산2-14	유준영
17	춘의동 411	작 동 200	김덕기	37	오정동 46-2	오정동 546-8	하지홍
18	작 동 202-2	"	"	38	고강동 150-2	"	"
19	원종동 100-1,2	작 동 126-1	민경재	39	여월동 245-1	역곡동 171	이상기
20	고강동 산34-14	고강동 25-1	안정호	40	대장동 551	대장동 670	한명우

일련 번호	소 재 지	주 소	성 명	일련 번호	소 재 지	주 소	성 명
41	대장동 675-8	대장동 681	방영석	61	고강동 25-8	고강동 27	안교육
42	" 676-5	"	"	62	원중동 117-4	원중동 117-4	김남주
43	춘의동 374	고강동 289	정찬섭	63	" 108-4	" 171	박홍석
44	" 421	여월동 243	원용철외 1	64	춘의동 408	역곡동 162	안병준
45	고강동 250-3	고강동 244	변호철	65	오정동 41-1	송내동 46	이종원
46	" 254	"	"	66	작 동 287-1	여월동 241-1	송인식
47	대장동 686-6	대장동 686	홍순분	67	원중동 117-3	원미동 48	함병현
48	" 685-6	" 670-13	구정예외 3	68	오정동 101-3	여월동 76-9	남기욱
49	오정동 40-1	고강동 49	최성환	69	대장동 675-3	대장동 675	김병선
50	대장동 685-7	대장동 670-13	구정예외 3	70	" 553	대장동 670	한명우
51	여월동 90-3	여월동 144	최춘혁	71	" 552	"	"
52	고강동 41-6	고강동 27	이유행	72	옥길동 489-1	옥길동 501-7	남석현
53	작 동 275	역곡동 129-3	오필운	73	고강동 21	고강동 227	이근표
54	" 275-2	"	"	74	" 19	"	"
55	" 200	작 동 197	한성택	75	여월동 245-13	여월동 244	원종권
56	여월동 181-1	여월동 144	최춘혁	76	춘의동 266	"	"
57	작 동 276	역곡동 129-3	오필운	77	여월동 186-6	" 79	이혜란
58	" 276-2	"	"	78	고강동 25	고강동 369-18	연인권
59	고강동 41-2	고강동 27	이유행	79	작 동 122-1	작 동 127-3	유제희
60	" 25-5	"	안교육	80	" 280	" 204-3	한기하

인련 번호	소 제 지	주 소	성 명	인련 번호	소 제 지	주 소	성 명
81	작 동 274	여월동 산2-14	이명훈	101	대장동 685-6	대장동 670-13	구정애
82	소사본동 349-4	소사본동 232-27	한준기	102	" 667-2	여월동 239-6	원탄희
83	" 340-40	"	"	103	오정동 64-5	고강동 45-3	곽만영
84	춘의동 90	심곡동 98-4	이정훈	104	" 18-2	여월동 239-6	원탄희
85	" 81-1,89	"	"	105	춘의동 115	춘의동 115	한기남
86	오정동 46-2	원미동 189-163	정 준	106	오정동 17-2	여월동 239-6	원탄희
87	여월동 245-1,2	약대동 182-31	최제식	107	고강동 129-3	고강동 263-3	변호면
88	대장동 685-13,14	심곡동 566-1	문형식	108	오정동 17-4	여월동 239-6	원탄희
89	여월동 243	도당동 69-1	박홍규	109	" 11-1	오정동 172	강운석
90	" 182-8	심곡동 490-19	홍태희	110	고강동 129-1	고강동 49-128	김건재
91	춘의동 238	여월동 243	원강희	111	" 113-2	여월동 239-6	원탄희
92	고강동 54-3	원종동 313	최강영	112	" 39	"	"
93	" 25-3	고강동 25-1	안정호	113	오정동 102-3	약대동 171-1	이옥수
94	" 24-1	"	"	114	고강동 232	고강동 230-1	최기호
95	대장동 667-5	여월동 239-6	원탄희	115	작 동 202-4	여월동 239-6	원탄희
96	고강동 232	고강동 230-1	최기호	116	" 176-3	작 동 68-2	민경찬
97	대장동 681	대장동 670	구제철	117	여월동 158-1,3,160-2	여월동 239-6	원탄희
98	" 667-4	여월동 239-6	원탄희	118	원종동 64-3	원종동 161	장수완
99	" 685-7	대장동 670-13	구정애	119	여월동 160-3,158-4	여월동 239-6	원탄희
100	" 667-3	여월동 239-6	원탄희	120	여월동 181-1	"	"

일련 번호	소 제 지	주 소	성 명	일련 번호	소 제 지	주 소	성 명
121	대장동 671-7	대장동 475	이태춘	141	춘의동 366	작 동 68-8	한기상
122	여월동 90-3	여월동 239-6	원탄희	142	여월동 160-5	여월동 239-6	원탄희
123	대장동 685-9	삼정동 313-7	권 용	143	작 동 272	여월동 239-6	원탄희
124	" 685-10	"	"	144	춘의동 379	"	"
125	" 685-11	"	"	145	작 동 228	"	"
126	여월동 30-2	작 동 117-4	한기창	146	오정동 41-2	"	"
127	" 29-4,30-3	"	"	147	원종동 107-4	대장동 686	김진구
128	여월동 256	고장동 357-14	변증수	148	" 108-3	"	"
129	대장동 685-13	심곡동 566-1	문형석				
130	" 685-14	"	"				
131	" 681	대장동 670	구제철				
132	" 667-9	"	장문순				
133	여월동 190	여월동 239-6	원탄희				
134	여월동 190	여월동 239-6	"				
135	오정동 17-2,17-4	오정동 546-8	하지홍				
136	대장동 546-4	대장동 670-16	방천석				
137	춘의동 412	작 동 111	최이영				
138	" 369	" 68-8	한기상				
139	여월동 158-10	여월동 239-6	원탄희				
140	작 동 200-14	"	"				

별첨3

주 유 소 허 가 자 명 단 (11개소)

소 제 지	성 명	주 유 소 명	허 가 일	비 고
여월동 245-13	원 중 권	은 행 나 무 주유소	94. 4. 27	조전부허가
춘의동 408	안 병 준	승 리 주유소	"	"
대장동 686-15	홍 순 분	사 거 리 주유소	"	"
대장동 667-9	장 문 순	한 다 리 주유소	"	"
대장동 546-9	박 종 수	대 장 동 주유소	"	"
여월동 28-1	남 천 우	삼 부 주유소	"	"
여월동 90-3	최 춘 희	여 월 동 주유소	"	"
작 동 200	한 성 택	작 동 주유소	"	"
원종동 108-3	김 진 구	한 화 주유소	"	"
고강동 15-2	김 재 현	북 두 주유소	"	"
오정동 17-4	원 탄 회	사 계 절 주유소	94. 5. 2	"

김일섭 의원

□. 질 문

부원에도 대규모 발전소가 있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지역협의회를 만들고 지원금이 발전소 주변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좀 밝히 주십시오.

□ 답 변

우리는 현재 부천북합화력발전소(오정구 삼정동 99-4)가 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89. 6월(법률 제4134호) 제정되어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중이고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중양)지원 사업심의위원회가 발족되어 지원금에 대한 예산책정 집행 등은 중양지원 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전력공사 부천북합화력발전소에서 집행한 93, 94년도 지원금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는 지역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한 지역은 없음

※ 발전소현황 : 별 첨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계 회	집 행	집 행 내 용	비 고
'93	37,400	48,318	○ 육영사업(38,347) • 교육용기자재(발송설비)지원 • 장학금 지급 • 아동용 도서구입 • 소년소녀 할우가장 지원 ○ 홍보비(9,971) • 발전소 운영 내용홍보	중 흥 중 내 동 중 부천국교 약대국교 삼정국교
'94	30,400	2,179	○ 육영사업(2,000) • 교육용기자재(방송설비)지원 • 장학금 지급 • 아동용 도서구입 지원 • 소년소녀 할우가장 지원 ○ 홍보비(179) • 발전소 운영 내용홍보	중 흥 중 내 동 중 부천국교 약대국교 삼정국교 93.3.31현재

○ 부친복합화력발전소 현황

- 위 치 :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99-4
- 종 사 자 : 176명
- 규 모 : 대지면적 2만9천평(95,868㎡)
연건평 5천4백평(17,871.69㎡)
- 착공일자 : '91. 5. 22
- 준공일자 : '94. 2. 25
- 시설용량 : 진기출력 473MW(M:10)
- 열 출 력 : 410Gcal/hr (G:10)
- 공급대상지역 : 서울 및 경인지역
- 공 급 원 : 열, 진기
- 연 료 : 청정연료(LNG)

이종길 의원

□ 질 문

1. 지난 본회의 심의 시 부천시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전액폐지한 이유는?
2. 현실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지원계획은?

□ 답 변

1. '94 본예산에 시 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20억원과 경기도 육성자금 부담액 12억원 등 총 32억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시의 재정형편상 부득이 12억원만 확보하고 20억원은 삭감
2. '94년도 부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은 1차 추경 시 10억원을 확보하고 기 조성하여 상반기까지 회수되는 육성자금 25억 5천만원과 은행출연금 10억원 등 총 45억 5천만원을 하반기에 업체당 1억원의 범위 내에서 46개업체에 융자 지원할 계획임.
- 경기도에서도 '94 중소기업 운전자금 100억 2천 5백만원을 부천 관내 104개 업체에 5월(46개업체)과 8월(58개업체) 2차에 걸쳐 지원키로 결정됨.

김태현 의원

□ 질 문

1. 식육업자들이 김포 사우리에 있는 천보식품 도축장을 이용하면서 부천시 도축장을 기피하는 이유는?
2. 그로 인한 도축세 수입의 예상 손실액은?
3. 도축개보수예산의 집행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은?

□ 답 변

1. 부천시 도축장 현상황 및 정육업자의 관외작업 경위
 - '94. 2. 28자로 부천시축산기업조합과의 도축장임대위탁계약 만료에 따른 시직영 추진
 - '94. 3. 2 도축인부의 임금인상 요구(도축해체수수료수입액의 50% → 55%)와 작업거부
 - 축산기업조합에서 도축해체용역기로 합의하고 작업개시

- '94. 3. 3 축산기업조합 이사회의 도축해체용역 거부로 작업이 중단됨에 따라 3. 4부터 임금협상 타결 시까지 잠정 휴업조치
- 정상작업을 위하여 도축인부에 일용인부 채용 또는 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 조례의 개정(도축해체수수료의 50% → 55%지급)을 제시하였으나 거부하였으며(작업개시와 동시 임금인상요구)
- 축산기업조합측에 도축해체용역을 협의하였으나 협의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관외작업을 하게 된 것이며(김포 우석식품과 도축약정 체결)
- 시에서는 축산기업조합의 일방적인 관외작업 통보 및 도축인부의 지속적 임금인상 요구로 인하여 정상운영이 무산됨에 따라 부득이 금년 말까지 장기휴업 조치 후 폐쇄기로 방침을 결정하였음.

2. 부천시정육업자의 김포작업으로 인한 도축장휴업에 따른 시수입 손실 예상액

- 도축장운영시 수입예상액 : 984,300천원
 - 도 축 세 수 입 : 260,500천원
 - 도축장사용료수입 : 723,800천원
- 도축장운영시 세출예상액 : 964,209천원
- 손실 예상액 : 20,091천원

3. 도축 개보수 예산의 집행 상황

- 도축개보수 예산집행액 : 4,087천원

4. 향후 대책

- 부천시 정육업자의 관내도축장을 이용한 육류공급기여도는 '93년 약 52% 정도였으며, 잔여물량은 김포 우석식품 외 전국 15개 도축장에서 지육형태로 반입되거나 육가공업체에서 공급되는 정육 또는 2차 가공육 형태로 공급되어 육류수급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 육류의 장거리 수송으로 인한 변질을 방지하여 시민에 신선한 육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김포 우석식품과 협의 우석식품의 냉장, 냉동시설을 보완키로 하였으며 축산기업조합의 냉동차량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규정(10℃ 이하 냉장운반)에 적합하게 운반토록 하였음.
- 현재 부천시 정육업자의 전근대적인 육류취급방식의 퇴조와 함께 향후 육가공업체, 계열화업체, 대형식육유통체인 등에서 위생적으로 가공포장되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유통체계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관내 오정구 삼정동 일원에 축협중앙회로 하여금 당초 '97년도까지의 도축장 이전

계획을 '96년도까지 초현대식으로 완료토록 하여 부천시 및 수도권지역의 육류수급에 원
환을 기하도록 할 것임.

※ 도축장 이전계획 현황

- 위 치 :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12-15일원
- 지 목 : 답(생산녹지)
- 부지면적 : 26,000㎡(7,865평)
- 건물면적 : 2,000평 내외
- 사업기간 : '94년 ~ '96년(3개년)
- 연차별 추진계획
 - 1년차 : 부지매입, 설계
 - 2년 ~ 3년차 : 토목, 건축공사 및 기계장비 설치 완료
- 도축능력(1일) : 소100두 이상, 돼지 700두 이상
- 투자계획 : 11,000백만원

김옥현 의원

□ 질 문

1. 시에서 운양키로 되어 있는 도축장의 현재운영 상태는?

□ 답 변

1. 부천시 도축장 현상황 및 정육업자의 관외작업 경위

- '94. 2. 28자로 부천시축산기업조합과의 도축장임대위탁계약 만료에 따른 시직영 추진
- '94. 3. 2 도축인부의 임금인상 요구(도축해체수수료수입액의 50% → 55%)와 작업거부
- 축산기업조합에서 도축해체용역키로 합의하고 작업개시
- '94. 3. 3 축산기업조합 이사회의 도축해체용역 거부로 작업이 중단됨에 따라 3. 4부터 임
금협상 타결 시까지 잠정 휴업조치
- 정상작업을 위하여 도축인부에 일용인부 채용 또는 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의 개정(도
축해체수수료의 50% → 55%지급)을 제시하였으나 거부하였으며(작업개시와 동시 임금인
상요구)

- 축산기업조합측에 도축해체용역을 협의하였으나 협의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관외작업을 하게 된 것이며(김포 우석식잡과 도축약정 체결)
- 시에서는 축산기업조합의 일방적인 관외작업 통보 및 도축인부의 지속적 임금인상 요구로 인하여 정상운영이 무산됨에 따라 부득이 금년 말까지 장기휴업 조치 후 폐쇄기로 방침을 결정하였음.

장명진 의원

□ 질 문

개인택시가 3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특정 종교단체의 표시를 위한 택시는 4부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4부제로 운영되는가? 특혜가 아닌가?

□ 답 변

○ 현 황

- 개인택시 사업자 : 1,106명
- 운 행 방 법 : 3부제(가, 나, 다조로 2일 근무 1일 휴무제임)

※ 종교조 운행현황

구 분	기독교(십자)조	불 교(불자)조	비 고
회원수	42명	60명	
시행일	'92. 6. 30	'93. 5. 19	
휴조일	• 매 주 : 수, 일요일 • 매 월 : 1, 3주 금요일	• 매 주 : 화, 금요일 • 매 월 : 1, 3주 일요일	

○ 종교주 운행 이유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종교인들의 역할이 기대되고 기존 가, 나, 다조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건전한 종교활동과 지역봉사활동 차원에서 인정

○ 특혜 부문에 대하여

- 종교조는 일반 가, 나, 다조보다 월평균 1일을 운행하지 못하고 있음.

□ 질 문

약대주공아파트가 있고 부친국민학교 정문에서 불과 몇미터밖에 안 되어 담 옆에 소신여객 5번, 70번, 11번 등 종점이 형성되어 무단으로 2열 주차를 하고 있는데,

① 확인된 바 있는가 묵인하고 있는 이유는?

□ 답 변

○ 부친국교앞 도로상 기·종점 노선버스 현황

노선별 개	1번	5번	5-1번	11번	70번	70-1번
55	8	8	5	12	15	7

- 신도시 내 여객자동차 터미널부지 약 8,600평에 우리시 관내 운행하고 있는 서울 및 관내 버스업체로 하여금 부지구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버스업체의 제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단기적으로 신도시에서 국도 39호선 연결 고가도로 공사완료(금년말)시 고가도로 하단부에 차고지 입차 방안 추진하고 있으며,
- 항구적으로는 상동 개발지구 내에 버스종합터미널 약 25,000평을 계획하고 있음.

□ 질 문

멸피로가 끝나는 4거리 일명 쌍굴다리 입구 동쪽 부근에 불법주차로 인해 낙원에식장 쪽에서 오던 차량이 우회전 차도를 확보하지 못한 채 직진차량과 섞여 혼잡을 초래하고 있는 바

① 예산을 무자하여 확장하고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단속을 해야 하는데 단속하지 않는 이유?

□ 답 변

- 소사동 쌍굴다리가 편도 1차선으로 주변통행량 급증에 따른 병목현황
- 서부쪽 방향은 주·정차 금지 및 건인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동쪽 방향 노선에는 쌍굴다리로 차선이 확보되지 못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에 어려움이 있음.
- 쌍굴다리 확장이 되면 차선이 유지되므로 사업완료 시 불법 주·정차 단속할 계획임.

보건사회국소관

장명진 의원

□ 질 문

소규모 업체에서 내뿜는 공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공해피해에 대한 대책은? 조사한 실적을 제시바랍니다.

□ 답 변

- 관내 공장 4,500여 개소 중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 가동하고 있는 공장은 849개소이며, 나머지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으로 방지시설 설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업소 등에서 악취·등 대기오염물질 유발가능성이 있음.
- '94년 현재,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단속실적은 162건을 단속하여 42건을 적발, 41건은 경고 및 시정 지시하고, 1건은 고발조치하였음.
- 생활악취, 생활소음은 86건을 단속 10건을 적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 환경기준이 초과된 3개업소에 대하여 경고 2개소, 개선명령 1개소 등 행정조치 하였음.
- 특히 도시 변두리 취약지역에 창고나 가건물 등을 이용한 소규모 무허가 영세업체가 많이 있으나, 적은 공해단속 인원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완벽한 공해단속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거나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펴겠음.

□ 질 문

일반 음식점 허가 시 20평까지는 요리사 자격증이 없어도 되고 그 이상은 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전국적인 요리사면허증 발급자와 20평 이상 일반 음식점의 수가 현격한 차이가 있어

- ① 허가를 특하기 위하여 면허증을 내어 또는 발급하고 있는데 제도상의 난맥상을 고치도록 조치할 의사는?
- ② 상가 지역에서 유치원 인가가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간이주점이 안 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③ 허가시 가스보급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허가시만 제출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아니하는
바 요식행위 아닌가?

□ 답 변

①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면허증을 대여 또는 발급하고 있는데 제도상의 난맥상을 고치도록 조치할 의사여부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4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조

◦ 조리사를 두어야 할 식품접객업소

- 복어를 조리, 판매하는 업소
- 객석면적 66㎡ 이상으로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업소
- 집단급식소

◦ 부친시의 조리사 고용대상업소 및 조리사 현황

- 조리사 고용대상업소수 : 약 610개 업소
- 조리사 수 : 약 170명

◦ 문제점

- 조리사 면허 대여행위
- 조리사 고용대상업소의 자격증 소지자 구인난 가중
- 조리사 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

◦ 그간의 추진사항

- 조리사를 두어야 할 집객업소 규모의 상향조정 건의
 - 건의일자 : '93. 3. 11
 - 건의기관 : 경기도를 거쳐 보사부에 건의
 - 건의내용 : 조리사 고용 대상업소 규모를 66㎡에서 99㎡로 상향조정

◦ 향후대책

- 조리사 고용 대상업소 규모의 상향조정 재건의
- 복어 취급업소 및 대형업소를 제외한 소규모 업소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
- 업주 및 종사자의 위생교육 강화

② 상가지역에서 유치원 인가가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간아주집이 안 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과 예외규정을 두고 유치원이 끝난 다음에 영업하는 시설은 허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제도를 개선할 방법여부

○ 관련법규

- 학교보건법 제5조 및 제6조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의 3

○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의 구분

- 절대 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대상시설 설치불가)
- 상대 정화구역 :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로서 절대 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제한 대상시설이라 하더라도 학교 환경위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설치 가능)

○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시설이 제한되는 위생관련 영업

- 식품위생 관련영업 : 유흥주점, 단란주점영업
- 공중위생 관련영업 : 숙박업, 전자유기장영업 등

○ 상업지역에 소재한 유치원 수 : 1개소

- 오정구 원종동 소재 인회 유치원(상업지역 지정 이전 설립)

○ 문 제 점

- 유락시설, 숙박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상업지역에 교육시설이 소재함으로써 상업지역으로서의 기능저하 초래
-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영업시간과 유치원생의 등하교 시간에는 상당한 시차가 있음에도 규제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어 유치원 주변 건물주 및 영업주의 불만초래

○ 향후대책

- 유치원은 학교 환경정화구역 설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학교 보건법령 개정건의

③ 허가시 가스보급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허가시만 제출하고 계속적인 관리를 아니하는바 요식행위 여부

○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용관리법 제33조

○ 액화석유가스 보급영수증을 제출해야 할 식품점개업소

- 조리실을 제외한 영업장 면적이 70㎡ 이상인 업소
- 지하에 위치한 업소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업소
- 관리부서
 - 각 구청 사회산업과
- 관리방법
 - 연 2회 이상 전 대상업소의 관리카드 확인
 - 유효기간 1년이 도래한 업소에 재가입 촉구
 - 가스사용 시설의 적법여부 점검 후 간접적 제재로 재가입 유도
- 향후대책
 - 가스대상 책임보험 가입대상 업소가 보험가입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질 문

각종 세차장에서 정화시설을 가동치 않은 채 세차물을 방류하고 있어 환경오염의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바,

- ① 단속한 근거를 제시하고,
- ② 차후 대처방안을 밝히시오.

□ 답 변

- 관내에는 '94. 5월 현재 64개 세차장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령 받아 영업 중에 있음.
- '93년도 단속실적은 총 126회를 단속하여 위반업소 15개소를 적발, 배출허용기준초과 13개소 개선명령, 상습적 위반업소 1개소 조업정지명령, 방지시설 설치완료 신고를 하지 않고 사전 조업한 1개소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하였음.
- '94년 5월 현재까지 4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8개소를 적발, 배출시설을 무단철거 3개소 허가취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3개소 개선명령, 기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3개소에 대하여는 시정지시 하였음.
- 대부분의 세차장이 도로변 공터를 임대하여 세차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영업주가 대부분 영세하고 임대기간 등의 보장성이 없으므로 방지시설 투자를 기피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정화시설도 처리기술 부족 등으로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임.

-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정화시설을 정상가동토록 행정지도하고, 노후되어 정화능력이 떨어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보수 등 개선조치토록 유도하겠으며,
- 앞으로 세차 폐수를 정화하여 재활용하는 시설을 설치토록 적극 권장하고, 동 시설을 설치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 횟수를 감면하는 방안 등을 검토, 시행하겠음.

□ 질 문

생수업체는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 ① 기준치 검사를 부천에서도 실시한 적이 있는가?
- ② 생수업체수와 차후 업체 관리사항을 밝혀라.

□ 답 변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및 제31조
- 생수의 수질검사 및 성분규격
 - 원수의 음용수 적합여부에 대한 수질검사를 6개월마다 실시
 - 원수의 성분규격은 암모니아성 질소 등 38개 항목 설정관리
- 생수업체(제조업체) : 없음
- 유통생수 수거검사
 - 수거검사 : 6회 12건
 - 대 상 : 생수 판매대리점 7건, 유통생수 5건
 - 검사기관 :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
 - 검사결과 : 검사 진행중
- 생수 판매대리점의 관리대책
 - 대 상 : 13개소(원미구 5, 소사구 3, 오정구 5)
 - 생수 판매대리점 및 유통생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불량생수 유통 사전 차단

□ 질 문

- 공동주택도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세대당 월 800원씩만 받고 추가금에 대해 시에서 부담

해야 된다고 본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쓰레기처리 업소가 단독주택 쓰레기를 처리하는 위생공사와 공동주택 쓰레기를 처리하는 대행업체의 2가지가 있다. 그중 단독주택에는 세대당 800원을 받고 연간 총 수입금은 약 6억 정도이고, 시에서 약 70억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에도 조세사용원칙에 의거 약 3000원에서 4000원 정도를 세대당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 답 변

○ 현행 쓰레기 수거체계

- 단독주택 : 위생공사(청소도급업체)
- 공동주택 : 5개 청소하가업체

○ 쓰레기 수거수수료 부과기준

- 단독주택 : 재산세 + 인구수(통합공과금에 부과)
- 공동주택 : 난방용 연료기준
 - 연탄사용가구 : 원 4,000원 미만
 - 가스, 유류사용가구 : 원 3,500원 미만

○ 향후개회

- '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체계로 전면 개정됨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전망

□ 질 문

- 요즘은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있다. 타 시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준공무원에 대해 산재보험혜택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 답 변

○ 산재보험 적용범위

- 근 거 :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 2항
- 적용대상
 - 5인 이상의 사업장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운수, 창고, 통신업, 부동산업, 기타 서비스업

- 총 공사금액 :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 발목제적량 800m³ 이상 발목업

○ 준공무원(가로 환경미화원 등)에게 산재보험 혜택 방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하는 가로환경미화원 등에 대하여는 강제적용 대상에서 제외(의무적 사항이 아님)
-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에 임의가입 가능
- 관계기관과 협의 95년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

도시계획국소관

장명진 의원

□ 질 문

- 도당동 산50-4번지 6m도로가 우천시 산에서 흙이 내려와 도로를 덮곤하여 장마철을 대비한 대책이 요구되는데 사후 조치할 사항은?

□ 답 변

- 도당동 산50-4번지는 도당근린공원 편입토지로서 '95년부터 '96년까지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조성될 계획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므로 계획이 확정되어 공사를 할 때까지 도로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명진 의원

□ 질 문

- 춘의로 확장계획이 있는데 기존 가로수통 교체시킨 이유 및 도로확장 시 이식시키므로 발생하는 고사율 및 이식비용은 얼마나 되며 예산낭비는 아닌가?

□ 답 변

- 기존 가로수는 흰사시나무로 해충발생(흰불나방)이 심하고 5월이면 종자 비산으로 인한 꽃가루가 날리 평소에 주민들의 교체하여 달라는 민원이 많았으므로 '94년 춘기에 왕벚나무(87본)로 수종갱신 식재하였음.
- 도로확장 시 이식비용은 8,000천원이 소요되며 환착율은 적기식재 시 98% 환착됨.
- 도로확장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삭막하게 방치할 수 없어 식재한 것으로 도로확장 시 이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김옥현 의원

□ 질 문

- 약 40여 그루의 가로수가 고사된 상태인데 원인은?
- 원인분석 후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재식재 여부는?

□ 답 변

- 고사된 가로수는 인위적 피해(사람, 교통사고)등으로 손상이 된 가로수가 대부분이며 일부는 공해로 인해 고사되고 있음.
- 멀퇴길에 식재된 가로수중 봄가뭄으로 인하여 생육이 부진한 묘목은 아직 신엽이 나오지 않고 있으나 고사가 확인되면 즉시 하자보수 시키겠음.
- 관내 44개 노선을 대상으로 결주목(고사목 포함)조사를 실시하여 춘기에 226본을 보식하였으며 잔여분 416본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추기에 식재 완료할 예정임.

임광인 의원

□ 질 문

- 소사 삼거리 부근 시설녹지에 공용 주차장 건설용의는 없는지?

□ 답 변

- 본 지역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도시공원법 8조, 시행령 7조 1항 2호 라목에의 주차장 설치는 불가능함.

□ 질 문

- 팔당원수로 정수하는 과정을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수할 용의는 없는가?

□ 답 변

- 현재 운영중인 여월정수장의 자동화 시스템 도입은 전반적인 시설개량에 따른 비용의 과다소요로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 95년에 착공하여 97년도 완공목표로 추진하는 일일 23만5천본 규모의 광역5단계 작동정수장 시설에 대해서는 최첨단 자동화시스템 도입을 검토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명진 의원

□ 질 문

- 내동교회 앞 차도가 표고차가 심해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관계로 표고차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 답 변

- 상기 도로는 폭원 30미터 도로로서 도로구조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으며 차도를 낮출 경우 인접 주택지와 도로와의 높이차로 주민생활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므로 차도 이용자는 시거가 짧기는 하나 기존대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김옥현 의원

□ 질 문

- 시에서 인허가 및 공사발주권 중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로 인해 도로굴착작업 및 덧씌우기 공사를 할 때 허가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는 감시기구를 설치할 의사는?
- 현재 도로 덧씌우기를 하면 기존 상하수도 기타 맨홀 뚜껑이 도로지면과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 답 변

- 현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공사 및 도로굴착 작업 시 공사시행구간의 지리 여건에 밝고 학식이 풍부한 통장 및 주민 등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공사감독 및 업무협의 등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감시기구는 설치할 계획이 없음.
- 도로 덧씌우기 공사 시 각종 맨홀의 인상작업과 병행하여 사업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미인상된 맨홀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인상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홍보 및 감독을 강화하여 앞으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누락됨이 없도록 하겠음.